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ESG 공시 및 인증 의무화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2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ESG 공시 의무화	3
2. ESG 정보 인증제도 도입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Ⅲ. 검토의견

1. ESG 공시 의무화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기업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59조의2(기후전략 등 목표 수립) <u>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재하는 기후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u>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
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 등
으로³⁾, 그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용어사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
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에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
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
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
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
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⁴⁾

□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ESG⁵⁾ 관련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IFRS 재단⁶⁾ 산하의 ISSB⁷⁾는 2022년 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3. 임원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허위기재·미기재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다음과 같음.

• 행정조치(§164):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주의 등

• 손해배상책임(§162):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

• 과징금(§429): 전년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444, §446):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제출)

5)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용어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를 의미함.

6)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7)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1년 11월 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S1(일반)⁸⁾ 및 S2(기후)⁹⁾ 최종안을 발표하였음.¹⁰⁾

○ EU는 상장·비상장 대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를 2025년(2024회계연도)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¹¹⁾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규칙(climate-related disclosures)을 확정·발표하여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2026년(2025회계연도)부터 법정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였으나,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효력이 일시정지됨.¹²⁾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지속가능보고서¹³⁾(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기후를 포함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¹⁴⁾한 바 있으며, 현재 공시기준, 대상 기업, 도입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¹⁵⁾에 있음.

8)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9)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2023. 12. 26.

11)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 5.

12)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13) 환경 관련 기회·위기로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 1. 14.

15)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후 분야부터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되,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한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음. 2024년 4월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2025년 상반기 중 공시기준 및 로드맵 발표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의 정례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예정임.

- 한편,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자율공시 외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사업보고서 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거래소 자율공시, 개별법에 따른 공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ESG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1] 국내 ESG 관련 공시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보고서 공시	● 금융·조세·환경·노동·공정거래·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라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차목·카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4-9조 ● 사업 관련 환경규제 준수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제4항 * 환경물질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부 규제 준수사항, 향후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 ●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관련 사항 - 「기업공시서식」 제11-4-10조 ● 여성임원 현황 - 「기업공시서식」 제9-1-1조 중 여성임원 현황
거래소 자율공시	● 녹색경영정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시행세칙 제8조제7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시행세칙 제13조제12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가족친화 경영정보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15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14호 * 가족친화인증·취소, 가족친화법상 과태료 부과조치
개별법상 공시	●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 환경보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계획, 성과에 관한 사항 등 공개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성)

- 그런데, 이와 같은 ESG 공시 체계는 정부부처 및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⁶⁾
- 이에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공시채널의 일원화·체계화를 통해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EU 등 해외 주요국들의 기후공시 강화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국가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공시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예정¹⁷⁾이라는 점, 향후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¹⁸⁾에 따른 소비자 소송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6) 국회입법조사처,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안건 주주총회 상정 의무화 규제 검토」, 2024. 2.

17)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 5.

18)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출처: 환경 용어사전)

□ 한편, 개정안 부칙은 최초 1개 사업연도와 관련한 ESG 공시와 관련하여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 기재에 의한 배상책임(제162조1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20) 및 벌칙(제444조제13호2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배상책임(제750조 및 제756조22))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2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

이는 ESG 공시의무 신설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ESG 공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²³⁾에게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시대상 정보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²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기업과 정보 범위의 적정성, 해외의 동향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외 공시제도의 도입·이행현황, 규제 신설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24) 다만,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기후를 포함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시 제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초기단계라는 점²⁵⁾, 국내의 경우도 ESG 공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단계로 향후 국내 기업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신력 있게 인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²⁶⁾, 국내 공시기준 정립의 선행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행 거래소 공시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3건²⁷⁾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5)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정책동향(자료: 금융위원회)

- ▶ **(EU)** 2023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가 발효('25년도 공시예정)되어 각 EU 회원국은 법제화를 해야하나, 아직 27개국 중 12개국만 법제화를 완료
- ▶ **(영국)** ISSB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공시기준(UK SRS)을 '25.1분기 중 결정예정이며, 이후 관련 FCA 규칙(상장법인) 등 개정예정
- ▶ **(일본)** ISSB를 기반으로 일본 공시기준(SSBJ) 발표('25.3월) 후 내각부령(시행규칙) 반영 예정
-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 최종안 승인('24.3월) 이후 소송제기로 절차진행 중지

26) 국내 대부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3월말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은 5월말까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미인증 환경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738호, 2024. 6. 20.), ②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15호, 2024. 8. 27.), ③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715호, 2024. 9. 5.)

2. ESG 정보 인증제도 도입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ESG 공시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9조의3(회사의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인증 기준·절차 및 등록 인증기관의 기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8의2.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설>	8의3. 제15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
8의3. · 8의4. (생략)	8의4. · 8의5. (현행 제8호의3 및 제8 호의4와 같음)
9. ~ 21. (생략)	9. ~ 21.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최근 ESG 공시 의무화 확대와 함께 국내외에서는 ESG 정보 인증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EU는 2022년 CSRD²⁸⁾의 채택으로 2024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²⁹⁾

[표2]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동향

- 2024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정보의 공시와 인증을 의무화
- 인증수준: 제한적 확신 수준 → 2028년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예정
- 인증기준: 2026년 10월까지 제한적 확신 수준, 2028년 10월까지 합리적 확신 수준의 기준 채택 예정
- 인증기관: 법정감사인 + 인가 받은 독립된 인증서비스 제공자(Accredited Independent Assurance Services Provider)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 2024.)

28)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9)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 2024.

-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건수는 200건으로 전체 기업의 25% 수준이며, 지속가능보고서의 인증 건수는 188건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건수의 94%에 이르고 있어 해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³⁰⁾인 것으로 나타남.³¹⁾

[표3]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및 인증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간건수(개)	70	73	76	84	97	136	200
인증건수(개)	66	70	72	78	88	130	188
인증비율(%)	94	96	95	93	91	96	94

(자료: 박성원, “2022년 지속가능성보고서 현황 및 시사점”, 『월간공인회계사』, 2023.)

- 개정안은 ESG 공시에 대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ESG 공시 인증 의무화는 앞에서 검토한 ESG 공시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내외 공시제도의 도입 및 이행 경과,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30) IFAC(2023)에서 전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기업의 64%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박성원, “2022년 지속가능성보고서 현황 및 시사점”, 『월간공인회계사』, 2023.).

31) 박성원, “2022년 지속가능성보고서 현황 및 시사점”, 『월간공인회계사』, 2023.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요건, 등록행정관청,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추상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제도의 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무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